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논의 및 한국 정부 활동 분석 보고

2026. 11.

정책협력국
국제인권과

목 차

1. 개요 ····· 1
2. 국제 인권 상황 브리핑(유엔인권최고대표) ····· 2
3. 주제별 인권 동향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3
•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인권 특히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시대의 인권옹호자 보호
• 공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 지침 활용 사례 및 과제
• 중대한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부인·부정·역사 왜곡
• 민간 군사·보안 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 제7차 회기 경과보고서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8
•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
• 기후재원: 취약성과 책임에 관한 연구
•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위한 충분한 기후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과제 및 기회
3) 노인·여성 인권 ····· 13
• 인지기능 저하와 노인의 지속적 인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
•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및 여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이주민 인권·인종차별 ····· 15
• 현대적 노예제·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업무 개요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 예방을 위한 교육의 역할
• 인종차별철폐협약 보완규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6차 회기 보고서
5) 국가인권기구 ····· 19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보고서
•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활동 보고서
4. 자유권·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 기념 고위급 패널토론 ····· 22
5.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 15주년 기념 고위급 패널토론 ····· 24
6. 신규 선출된 특별절차 수임자 ····· 25

참고 1. 제63차 인권이사회 결의 한국 정부 투표 현황
참고 2. 제63차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상국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린 권고

1 개요

○ 올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60주년이자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 15주년을 맞는 해로, 제63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고위급 토론이 각각 개최되었음. 양대 규약의 이행 성과와 과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및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청년 참여 확대 등 인권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역할에 관한 논의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음.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승인 심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자원 확보 및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또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지원을 재확인하였음.

○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인공지능의 인권적 영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음. 아울러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 대응, 이주민 인권,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등 주요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 기간: 2026년 9월 7일(월)~10월 7일(수)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제출된 보고서: 145개(주제별 특별절차 수임자의 국가방문 보고서 포함)
- 채택된 결의 등: 총37건(무투표 채택 27건, 표결 채택 10건)
- 14개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 결과보고서 채택
- 7명의 특별절차 수임자 신규 선출
- 6번의 패널 토론 개최

2 국제 인권 상황 브리핑(유엔인권최고대표)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및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함. 미국·이란 간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단 내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및 레바논 등에서 지속되는 민간인 피해와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적대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 보장 및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 분쟁 예방과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 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제적 이해관계 규명, 피해자 중심의 전환기 정의, 인권에 기반한 신뢰구축 및 중재,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풀뿌리 단체와의 협력, 인권을 활용한 조기경보체계 강화, 국내외 책임규명 체계 강화를 7대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 나아가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인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규제와 독립적 감독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AI가 고용·민주주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부채 부담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가 인권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인권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는 '인권 중심 경제(human rights economy)'로의 전환을 촉구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민적 공간이 축소되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함. 특히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정치적 탄압과 자의적 구금, 디지털 감시 등을 지적함. 또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법률과 정책, 이주민·난민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차별적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적법절차 보장을 촉구함. 아울러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사법제도 개선 및 사형제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끝으로 유엔의 만성적인 재정위기가 국제인권 보호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80 개혁을 계기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함. 특히 국가, 시민사회, 기업, 학계, 청년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수호하고 국제인권규범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인권최고대표 브리핑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9. 7.)

- 한국 정부는 미얀마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분쟁이 격화되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아세안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힘. 또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의 교육, 고용, 이동의 자유 및 공적 생활 참여에 대한 제도적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수단 분쟁 당사자들에게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함.

3 주제별 인권 동향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인권, 특히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3/47)**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6차 인권이사회 결의 56/7에 따라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기업, 고위 공직자 등 영향력 있는 주체들이 언론인, 인권옹호자, 환경활동가 등의 공익적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행위를 말함. 이러한 소송은 반드시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소송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고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참여를 위축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명예훼손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금융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함.
- 기업과 인권 자원센터(BHRR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9개국에서 531건 이상의 SLAPP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약 70%가 형사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토지·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선주민 지도자, 지역사회 활동가, 여성 인권옹호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북반구에서는 민사소송이, 남반구에서는 형사절차의 악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한 활동가들이 기업으로부터 반복적인 소송을 당한 태국 사례 등을 소개하며, SLAPP이 취약한 집단의 권리 보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 SLAPP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소송의 조기 각하 제도, 원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소송 남용에 대한 제재, 피해자에 대한 법률·재정·심

리적 지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이 제시됨. 유럽연합의 SLAPP 대응 지침, 캐나다의 관련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각국의 입법 및 사법적 대응 사례도 소개됨. 다만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조기 각하 절차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됨.

- 전문가들은 SLAPP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판사·검사·변호사 대상 교육, 법률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 강화 및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정당한 소송 제기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표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각국의 법체계와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디지털 시대의 인권옹호자 보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3/52)**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제58차 인권이사회 결의 58/23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인권옹호자에게 미치는 위험과 보호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이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연대에 필수적인 수단인 동시에 감시, 검열, 온라인 공격 등 새로운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국가가 온라인 안전과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디지털 공간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기술기업들이 인권 보호보다 수익과 이용자 참여를 우선시하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함.
- 특히 인권옹호자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으로 ① 사이버범죄 및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통한 온라인 활동의 범죄화, ② 스파이웨어, 생체인식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표적·대규모 감시, ③ 인터넷 차단과 온라인 검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괴롭힘 및 위협 등을 지적함. 나아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감시 비용이 감소하고 개인정보 추적 및 분석 능력이 강화되면서 인권옹호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옹호자, 분쟁지역 활동가 등이 차별적 온라인 공격과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고 설명함.
-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기업의 대응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일부 기업이 인권옹호자 보호 정책과 신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인권침해 기록의 임의 삭제, 온라인 공격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기업의 인권실사와 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부족하며, 인권옹호자가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미흡하다고 강조함.

- 이에 각국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자의적인 인터넷 차단과 과도한 감시를 중단하며, 독립적인 감독기구와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특히 적절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스파이웨어 등 감시기술의 판매와 사용을 유예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인권실사 및 책임성 강화를 촉구함. 아울러 기업에는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강화,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 확보, 신속한 피해 대응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권고함.

※ 인권이사회 의제 3.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일반대화 세션에서의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9. 17.)

- 한국 정부는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흥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급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2019년 이후 인권이사회 결의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연구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왔음을 평가하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논의와의 일관성 및 상호보완성을 확보하고 규범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아울러 인권이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회기간 다중이해관계자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7년 제65차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결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공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 지침 활용 사례 및 과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3/50)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7차 인권이사회 결의 57/17에 따라 공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 지침(A/HRC/39/28)의 활용 사례와 이행 과정에서의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 특히 선거 참여에 중점을 두고 각국의 입법·제도적 개선 사례와 여전히 존재하는 참여 장벽을 검토함. 보고서는 공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뿐 아니라 다른 인권의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보고서는 각국의 우수사례로 선거제도 개혁,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 운영, 시민의 입법·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참여 확대 등을 소개함. 특히 아르헨티나의 선거제도 개혁, 체코의 재외국민 투표제도 도입, 브라질 등의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긍정적 사례로 제시함.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 장애인・원주민・소수자 등의 참여 보장 조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의견수렴 및 시민교육 등도 주요 이행 사례로 소개함.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공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함. 특히 언론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제한, 야당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과 위협, 국가안보 관련 법률의 남용 등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저해한다고 지적함. 또한 2026년 1월 기준 전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27.4%에 불과하며, 장애인, 선주민, 이주민, 청년 등도 법적・제도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정치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차단 등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유권자 등록, 투표, 개표 및 선거 결과 전달 등에 활용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선거 과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OHCHR는 각국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 특히 여성과 소외집단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시민교육 확대, 독립적인 감독 및 진정・구제절차 마련,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등을 권고함.

○ **중대한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부인・부정・역사 왜곡(진실정의 특별보고관, A/HRC/63/25)**

- 특별보고관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부인・부정・역사왜곡이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 역사적 기억의 보존 및 재발방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인권침해를 부정하거나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온

라인상의 역사 부정 및 괴롭힘 등을 소개함.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을 통한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의 확산이 역사적 사실과 인권침해 증거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함.

- 한편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함. 이에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적법성·필요성·비례성·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역사 연구와 비판적 논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특별보고관은 각국에 과거 인권침해 관련 기록의 보존·공개, 피해자 중심의 진실규명 및 추모사업, 역사·인권교육 강화, 피해자와 인권옹호자 보호 등을 권고함. 아울러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여 역사 부정에 따른 폭력 재발 위험을 감시하고, 기술기업에는 디지털 증거 보존과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인권 기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9. 25.)

-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부인과 역사왜곡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정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특별보고관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특히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한 과거 인권침해 조사와 조사결과의 공유 등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소개함.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 민간 군사·보안 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 제7차 회기 경과보고서(정부간 실무그룹, A/HRC/63/41)

- 민간 군사·보안 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은 2026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7차 회기를 개최하고 국제 규제문서 제5차 수정초안을 논의함.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민간 군사·보안 기업의 활동이 무력분쟁뿐 아니라 국경·이민 관리, 법 집행, 인도적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투명성과 감독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에도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특히 인공지능과 감시기술 등 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인권 위험에 대응하고,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제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회기에서는 국제 규제문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됨.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팔레스타인 등은 기존의 자발적 규범만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지지함. 반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은 국가별 법체계의 차이와 폭넓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구속적 문서 마련을 지지함. 유럽연합은 문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입장을 유보하면서 기존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및 몽트뢰 문서와의 정합성을 강조함.
- 실무그룹은 제5차 수정초안 전체를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민간 군사·보안기업의 정의와 활동 범위, 금지행위, 국가의 관할권, 등록·허가 및 감독체계, 피해자의 사법접근권과 배상 등을 논의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업의 활동이 무력분쟁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범죄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촉구함. 특히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감시기술, 개인정보 처리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을 제안함.
- 실무그룹은 2017년 출범 이후 국제 규제문서 초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문서의 법적 구속력과 적용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함. 이에 제63차 인권이사회에서 실무그룹의 임기를 3년 연장하고, 차기 회기에서 국제 규제문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함. 이러한 향후 계획은 합의로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비구속적 문서 마련을 전제로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유보를 표명하였으며 영국과 일본도 이에 동조함.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기후변화

○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3/51)**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57차 인권이사회 결의 57/30에 따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전 세계 청년들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건강권뿐 아니라 교육권, 노

동권, 사회보장권 및 사회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특히 빈곤, 고용 불안정, 경쟁적인 교육환경, 차별과 폭력, 무력분쟁, 기후위기 및 디지털 환경 등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전문인력 및 서비스 부족, 높은 치료비, 지역 간 격차 등이 청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함. 특히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은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원체계가 단절되고, 부모 동의 요건이나 강제치료, 격리 등 당사자의 자율성과 사전 동의에 기초한 치료 원칙을 침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함.
-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기존의 시설 중심·위기 대응 중심의 정신건강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개입,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자율성·사생활 보호·자유롭고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동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정신건강 관련 법률과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OHCHR는 각국에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범정부적·다부문적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권고함. 특히 강제적 치료 관행의 철폐, 아동·성인 간 지원체계의 연속성 확보, 차별과 사회적 낙인 해소, 독립적인 감독 및 실효적인 진정·구제절차 마련을 촉구함. 또한 국가인권기구 등 국내 인권 메커니즘의 모니터링과 조사, 후속조치에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할 것을 권고함.

○ **기후재원: 취약성과 책임에 관한 연구(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 A/HRC/63/39)**

- 유엔 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 책임과 취약성의 불균형을 발전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정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적 제도와 정책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국가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특히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이 비양허성 차관을 포함한 대출 형태로 지원되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우려함. 또한 기후재원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고 적응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재원은 기존 개발재원이나 공적개발원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과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비상사태 관련 권고적 의견을 검토하면서, 기후재원 제공이 단순한 자발적 원조가 아니라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와 연결된다고 설명함. 특히 ICJ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구속력 있는 의무와 국제협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미주인권재판소는 기후재원 배분 과정에서 평등과 비차별, 선주민의 권리, 정보접근권, 참여권 및 사법적 구제의 보장을 강조하였다고 소개함. 아울러 기후재원 조달과 배분에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탄소시장 제도를 검토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및 개발재원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을 인정함. 다만 탄소감축 실적의 과대평가, 그린워싱, 불공정한 수익 배분, 선주민에 대한 토지권 침해 및 지역사회 참여 부족 등 기존 탄소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함. 특히 탄소상쇄사업이 실제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역주민의 강제퇴거 및 생계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적 감독, 인권실사, 선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 공정한 이익 공유 및 효과적인 고충처리·구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국에 대해서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나, 초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보고서는 청정 조리기술(clean cooking) 보급과 핵심 광물의 개발을 기후재원 및 발전권과 연계하여 검토함. 청정 조리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보호뿐 아니라 실내 공기오염 감소, 여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탄소감축 효과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고 지역 여성의 참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수요 증가는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이에 개발도상국이 단순한 원자재 공급국에 머무르지 않도록 현지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부가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발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불법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s)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유출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특히 아프리카에서 매년 약 500억 달러가 불법자금흐름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방지하고 유출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기후재원 확보와 발전권 실현에 중요하다고 강조함. 전문가 메커니즘은 각국에 탄소시장에 관한 명확한 법률 및 규제체계 마련, 국내 감독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선주민에 대한 공정한 이익 배분, 국제협력 확대 등을 권고함. 아울러 기후재원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인권보호,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기후전환의 혜택이 개발도상국과 취약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위한 충분한 기후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과제 및 기회(유엔 사무총장, A/HRC/63/54)**

- 유엔 사무총장은 제59차 인권이사회 결의 59/25에 따라 기후재원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인권에 기반한 기후재원 확대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재원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투자 수요는 2035년까지 연간 3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2024년 선진국이 제공하거나 동원한 국제 기후재원은 1,367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또한 기후재원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어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재원 배분도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기후재원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운영체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함. 2024년 선진국이 제공한 공공 기후재원의 67%가 대출 형태로 지원되어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복잡한 신청 절차와 엄격한 지원 요건, 정보공개의 부족 등이 취약국가와 지역사회의

재원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함. 특히 원주민과 여성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재원 배분 및 사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기후사업에 대한 인권 실사와 환경·사회적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아울러 화석연료 보조금과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실질적인 배출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탄소상쇄사업 등이 기후대응을 저해하고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보고서는 기후재원 제공이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나 자발적인 원조를 넘어 국제법상 의무와 연결된다고 강조함. 특히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을 인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은 법적 의무이며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의무 위반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와 함께 사회권규약상 국제협력 의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발전권 등을 고려하여 기후재원의 조달과 배분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기후재원 확대를 위해 기존 국제적 재정 지원 약속의 이행과 함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특히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및 재배분, 화석연료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탄소세,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국제 금융거래세 및 항공·해운 배출부과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국제금융체계 개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양허성 금융을 확대하고, 채무 재조정과 감면, 기후재난 발생 시 채무상환 유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민간재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재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 민간투자가 인권 및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함.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후재원의 투명성, 참여 및 책임성 강화와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각국에 기후재원 사업의 설계부터 이행·평가까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선주민, 여성 등 취약집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사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함. 특히 기후재원 사업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와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선진

국에는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동원 약속을 이행하고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개발금융기관에는 대출 중심의 지원방식 개선과 인권보호장치 강화를, 민간기업에는 화석연료에서의 전환과 투자 전반에 걸친 인권실사 및 피해구제 보장을 권고함.

3) 노인·여성 인권

○ **인지기능 저하와 노인의 지속적 인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노인인권 독립전문가, A/HRC/63/35)**

-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의 변화가 노인의 존엄성이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무능력이나 의존성의 증가로 간주하여 노인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타인이 대신 결정하도록 하는 사회적·제도적 관행이 주요 인권침해 요인이라고 지적함.
- 보고서는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토대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에게도 법 앞의 평등한 인정, 자율성, 참여권 및 건강권 등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특히 인지능력의 저하를 법적 능력 박탈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자율성을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가족과 돌봄 제공자,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실현되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독립전문가는 인지기능 저하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함. 특히 언어뿐 아니라 표정, 행동, 감정 등 다양한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의료·돌봄 관련 결정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관한 선택에도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의료·돌봄, 주거, 사회보장, 교통, 사법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 인권적 접근을 통합하는 '권리 실현 체계(rights-realizing systems)'를 구축하고,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독립전문가는 각국에 인지기능 저하를 이유로 노인의 권리 행사와 의사결정

을 제한하는 법률 및 관행을 개선하고, 지원의사결정과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정책·서비스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충분한 재원 확보, 관계기관 간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통해 노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및 여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A/HRC/63/66)**

- 자문위원회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이 기존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함. 주요 유형으로 동의 없이 제작된 사적 영상의 제작·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과 스토킹, 개인정보 공개, 디지털 감시 및 통제, 온라인 성착취와 인신매매, 여성혐오 표현 등을 제시함.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이 폭력의 규모와 속도를 증폭시키고 피해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함.
- 나아가 보고서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이 여성의 존엄성, 생명과 신체의 안전, 사생활의 자유, 건강권, 표현의 자유 및 정치·사회적 참여권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함. 특히 청소년과 여아, 소수집단에 속한 여성, 이주·난민 여성, 여성 정치인·언론인·인권옹호자 등이 복합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함. 온라인 폭력이 현실의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여성의 공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민주적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 등 기존 국제인권규범이 디지털 환경의 젠더기반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함. 유럽연합의 여성폭력 방지 지침,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및 각국의 관련 입법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국제적 규범의 불균형과 국내법의 미비, 집행력 부족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인권에 기반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교차적 차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문위원회는 각국에 심각한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의 범죄화, 민사적 구제절차 마련,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권고함. 또한 기술기업에 제품과 알고리즘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사생활·인권 보

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콘텐츠 관리 및 삭제 조치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피해자 지원단체와 규제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수사·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디지털 문해력 및 성평등 교육 확대를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공통된 정의와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9. 24.)

- 한국 정부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이 기존의 성차별과 권력 불균형,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추가적인 폭력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함. 또한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의 복잡성과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착취물의 선제적 탐지 및 모니터링 등 대응 노력을 소개함. 아울러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권리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폭력 예방 및 대응 시 과도한 감시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와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함.

4) 이주민 인권·인종차별

○ **현대적 노예제·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업무 개요(현대적노예제 및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A/HRC/63/36)**

- 신규 선출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카타리나 슈바르츠(Katarina Schwarz)는 제60차 인권이사회 결의 60/25에 따라 기존의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특별보고관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통합한 이후 첫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이며, 2021년 기준 약 5천만 명이 강제노동 또는 강제결혼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함. 특히 기후변화, 무력분쟁, 빈곤과 불평등, 강제이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착취와 인신매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이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와 제한적인 이주정책이 착취 위험을 높이고, 특정 고용주에게 종속되는 체류허가 제도가 피해자의 탈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함. 또한 권위주의의 확산, 시민사회 활동 공간의 축소, 국제원조 감소 등이 노예제와 인신매매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

러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온라인 성착취와 사기 범죄를 통한 강제적 범죄 가담 등 새로운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제구조와 공급망 내 노동착취 역시 주요 문제라고 강조함.

- 보고서는 노예제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국제·국내 법적 체계가 발전했음에도 실제 이행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특히 피해자 식별과 가해자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재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인신매매 과정에서 강요된 행위로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예방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기업의 인권실사 의무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제한, 국제협력 및 피해 생존자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긍정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함.
- 특별보고관은 향후 통합 임무의 주요 과제로 피해 생존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리더십 강화, 국내 입법체계 개선, 인신매매 대응기관의 활동 여건 개선을 제시함. 특히 각국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조사하고, 이주정책과 노동권, 기업 공급망, 국가가 관여한 강제노동 및 사법적 구제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성별, 인종, 장애, 이주 지위 등 복합적인 취약성을 고려한 접근과 피해 예방을 우선시하고,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및 피해 생존자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현대적 노예제·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9. 11.)

- 한국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에 우려를 표명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2026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온라인 사기의 인권적 영향에 관한 부대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6월에는 뉴욕에서 28개국이 참여하는 '기술매개 인신매매 대응 우호국 그룹'을 출범시켰으며, 태국이 주최한 온라인 사기 관련 관할권 공백에 관한 부대행사에도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한 사실을 소개함. 아울러 신기술이 인신매매의 수단이자 대응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특별보고관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매개 인신매매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 예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유엔인권최고대표, A/HRC/63/70)**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제57차 인권이사회 결의 57/24에 따라 교육을 통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 예방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는 교육이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교육제도 자체가 구조적·제도적 인종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함. 특히 소수 인종·민족 집단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제한, 학교 내 분리교육, 차별적인 교육과정, 인종적 괴롭힘과 폭력 등이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한 인종차별 예방은 개인의 편견 해소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보고서는 교육제도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 및 포용적 교육 관련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명확한 이행계획과 예산, 인권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특히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만, 평등기구 등이 교육 분야의 구조적·제도적 인종차별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인종차별 관련 통계를 적절한 보호조치 아래 수집·분석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차별을 신고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교육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소수 인종·민족 집단과 시민사회, 특히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 보고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인종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예방·신고·조사·구제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아동 친화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체계와 상담·심리사회적 지원을 마련하고, 차별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인종적 고정관념과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제거하고, 선주민과 소수 인종·민족 집단의 역사, 문화 및 기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다문화·다언어 교육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인권최고대표는 각국에 교사와 교육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문화적 다양성 존중, 포용적 교수법 등에 관한 의무적·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소수 인종·민족 집단 출신 교사와 교육행정 담당자의 대표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또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인종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특히 교육이 과거 식민주의와 노예제 등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는 회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아교육·고등교육·비형식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추가 연구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보완규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6차 회기 보고서(특별위원회, A/HRC/63/73)**

- 인종차별철폐협약 보완규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6년 4월 27~29일과 6월 8~11일 개최된 제16차 회기 1·2차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 이번 회기에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규범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의정서 초안이 최초로 제시되어 조문별 논의가 진행됨. 의장 겸 보고관인 카드라 아흐메드 하산(Kadra Ahmed Hassan)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뿐 아니라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및 배상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추가의정서 초안은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의 정의 및 범죄화, 형사책임과 관할권, 범죄인 인도 및 국제협력,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 등을 규정함.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을 포괄하고, 인종차별과 종교에 기반한 차별이 결합되는 교차적 차별을 다루는 방안이 논의됨. 또한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교육, 인식개선, 사회적 대화 등 비형사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법접근권과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및 재발방지 보장 등을 포함한 구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됨.
- 보고서는 기존 협약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외국인혐오와 인종 프로파일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의 예방·감시 및 피해자 구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함.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인종적·민족적 차별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지 않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권실사, 투명성 확보, 알고리즘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됨. 다만 추가의정서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남. 아프리카그룹과 이슬람협력기구 등은 새로운 규범 마련을 지지한 반면,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은 기존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및 기존 규범과의 중복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 특별위원회는 추가의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국가보고서 심의와 개인진정 등 기존 절차를 통해 의정서 이행을 감독하고, 각국에도 국내 이행감시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함. 다만 혐오표현의 범죄화 기준, 종교 및 성별 등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형사적·비형사적 조치의 구분, 국가 간 협력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세부 규정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남음. 특별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의 구조와 내용을 수정하고, 2026년 10월 제3차 회의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5) 국가인권기구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보고서(유엔 사무총장, A/HRC/63/67)**

-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 결의 57/23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국가인권기구 관련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개국에 국가인권기구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레소토, 마셜제도, 나우루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 또는 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 또한 구금시설 감시와 고문 예방, 과거사 정의와 피해자 배상, 기업과 인권, 환경권 및 기후변화, 선거 감시, 취약집단 보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특히 OHCHR,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3자 협력사업을 통해 20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진정처리 및 사건관리 시스템 디지털화, 조직 역량 강화, 인권 모니터링 등을 지원함.
-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체계의 협력과 관련하여, OHCHR는 국가인권기구의 유엔 조약기구 심의 참여, 인권이사회 발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특별절차와의 협력을 지원함. 2025년 8월 이후 국가인권기구들은 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서면자료 29건을 제출하였으며, 제60·61차 인권이사회에서는 A등급 국가인권기구 31개가 참여하여 총 116건의 발언을 실시함. 특히 2026년 2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절차규칙을 개정하여 A등급 국가인권기구가 요청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건설적 대화 시작 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제5차 UPR 준비를 위해 50개 이상

의 국가인권기구로부터 우수사례와 개선사항 제안을 수렴함. 한편 유엔의 재정 유동성 위기로 인해 조약기구 회기 일정 확정이 지연되고 온라인 참여가 제한되면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인권체계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OHCHR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23개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인권기구가 법·정책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르메니아 국가인권기구는 청각·시각장애인의 법관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적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슬로바키아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단체에 과도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에 대응하여 일부 조항의 삭제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냄. 에콰도르 국가인권기구는 아프리카계 청년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과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행정제재, 공식 사과 및 인권교육 실시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스페인 옴부즈만은 가톨릭 성직자에 의한 성적 학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함. 이 밖에도 멕시코의 진정처리 및 정보공개 시스템, 필리핀의 수용자 권리구제,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열스트레스 예방 캠페인, 모로코의 기술매개 여성폭력 대응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
- 사무총장은 2026년 6월 기준 GANHRI의 등급심사를 받은 국가인권기구가 총 119개이며, 이 중 91개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A등급, 28개가 부분적으로 준수하는 B등급이라고 설명함. 국가인권기구가 국내 인권보호와 국제인권의무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16.a.1 달성을 위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회원국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독립성 보장, 사회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권보호 권한 및 구금시설 방문·조사 권한 부여, 충분한 예산 지원, 국가인권기구 직원과 협력자에 대한 위협 및 보복 방지를 권고함. 국가인권기구에는 파리원칙에 따른 책무 수행, 국제·지역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촉진, 국가통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인권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강화를 권고함.

○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에 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활동보고서(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A/HRC/63/68)**

-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 결의 57/23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함.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기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51개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였으며, 2026년 6월 기준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가 등급을 부여받아 이 중 91개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A등급, 28개가 부분적으로 준수하는 B등급으로 분류됨. 승인소위원회는 34개 국가인권기구에 A등급 부여・재승인 또는 유지, 3개 국가인권기구에 B등급 부여 또는 유지를 권고하였으며, 이라크 국가인권기구는 특별심사 결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됨. 특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심사를 거쳐 A등급 유지가 권고되었으며, 미얀마와 러시아 국가인권기구에 대해서는 등급 취소가 권고됨.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니제르 국가인권기구는 기관 폐지에 따라 GANHRI 집행위원회에서 등급을 취소함.

- 보고서는 등급심사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함. 주요 쟁점으로 민간 행위자의 인권침해 조사 및 구금시설 불시방문 권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보호 권한 보장(51건),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적시 지급(36건), 위원장・위원 등 지도부 선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포용성 확보(31건)를 제시함. 이 밖에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적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UPR・조약기구・특별절차 등 국제인권체계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유엔 조약기구와 UPR의 권고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등급심사 제도가 국제인권체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등급심사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소개함. 2025년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원을 통해 심사 대상 국가인권기구 대표의 대면 참석 비용과 동시통역 및 문서 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심사 절차의 형평성과 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2024년 12월 제3자 정보제출 지침을 채택하고 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사회 등이 심사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고기간 중 16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개인으로부터 23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총 102건의 제3자 의견을 접수함. 아울러 OHCHR는 승인소위원회의 축적된 권고와 심사 관행을 분석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엔의 재정 유동성 위기로 인해 심사 대상 기관 수가 이전 보고기간의 66개에서 5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함. 이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사무총장은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가 파리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국제적 동료심사 제도이자, A등급 국가인권기구의 유엔 인권체계 참여를 보장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함.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16.a.1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91개 A등급 국가인권기구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매년 약 21개 국가인권기구가 추가로 A등급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함. 이에 회원국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독립성 보장,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광범위한 조사권한 및 충분한 예산 확보, OHCHR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권고함. 또한 승인소위원회와 GANHRI 집행위원회에는 국가적·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파리원칙과 일반논평 및 축적된 심사 관행에 따라 독립적으로 등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함. 국가인권기구에는 승인소위원회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A등급에 따른 유엔 인권이사회·조약기구·UPR·특별절차 참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촉진할 것을 권고함.

4 자유권·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 기념 고위급 패널토론

○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양대 규약의 성과와 현대적 과제, 국제인권조약기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고위급 패널토론을 개최함.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동등하게 중요하며, 양대 규약이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 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의 발전과 지역 및 국내 인권보호체계의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조약기구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함. 다만 최근 재정 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 국가방문 및 회의 취소, 국가보고서 심의와 개인진정 처리 지연 등으로 조약기구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충분한 재원 확보와 접근성·효율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함.

○ 서창록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유권규약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함. 자유권위원

회는 일반논평과 국가보고서 심의 등을 통해 규약상 의무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인권문제에 대응해 왔으며, 향후 결사의 자유와 인공지능 시대의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일반논평을 통해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과 시민사회 활동 공간의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규범의 마련보다 기존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조약기구 간 협력과 업무 효율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재원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거나 개혁 자체를 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필립 알스턴 전 사회권위원회 위원장은 양대 규약이 국제인권법의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사회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자원 배분과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인권보호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①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강화, ② 기술 활용과 조약기구 간 조정을 통한 업무 방식 개선, ③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기업 및 투자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함. 또한 기존 인권메커니즘 간 협력과 대응 방식만으로는 사회권의 이행 부족과 새로운 인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 프리티 사란 사회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권규약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의제로 발전시키고 각국 헌법과 국내법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코로나19 당시 백신과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사례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개인의 국제적 권리구제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각국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함. 한편 사회권위원회 예산이 약 40% 삭감되고 회의시간 단축 및 사전실무그룹 회의 취소가 발생하는 등 재정 위기로 인해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함. 조약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을 경계하면서, 개혁안에 대한 영향평가와 비용·편익 분석 및 충분한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소수 거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제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5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 15주년 기념 고위급 패널토론

○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 15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의 성과와 우수사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패널토론을 개최함.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교육이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비판적 사고와 연대,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함. 특히 인권교육은 시민사회의 폭력 예방, 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행사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콜롬비아, 북아일랜드, 요르단 등의 인권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률과 정책, 교사 및 공무원 교육체계가 미흡하며 기후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에 모든 국가가 교육 단계와 분야를 불문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다바수렌 게렐마 주제네바 몽골대표부 대사는 몽골의 인권교육 제도화 경험을 소개함. 몽골은 1997년부터 인권 중심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UPR 권고를 반영한 국가행동계획과 2023년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2026~2030년 국가행동계획과 제2차 국가인권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적 역량 강화 및 정책 이행과 연계하고, 지역별 인권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함. 고란 조르지예프 세계스카우트운동기구 지역국장은 인권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소년이 참여와 리더십, 봉사활동, 대화 및 평화적 갈등 해결을 통해 인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양극화, 허위정보, 분쟁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학교,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및 청소년 주도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형식 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마리온 완지쿠 무투기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7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한 사례를 소개함.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 지역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교과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및 학습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인권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

방정부의 참여 부족, 인권교육 예산 부족, 전문 상담인력 및 장애인 접근 가능 시설의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함. 이에 케냐 인권위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 수립, 인권교육 전용 예산 배정, 교육부 내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실효적인 진정처리체계 구축 등을 권고함. 또한 교육과정 개발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의 주류화와 이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알레산드로 이엔치 이탈리아 연극 연출가 겸 인권변호사는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에서 예술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 사례를 소개함. 특히 OHCHR와 협력하여 추진한 예술 기반 인권교육 프로그램인 '랩스쿨(Lab School)'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나 피해자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교육의 공동 창작자이자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와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평화 구축과 인권존중 문화를 증진할 것을 촉구함.

6 신규 선출된 특별절차 수임자

○ 제63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총 7명의 특별절차 수임자가 새로 선출되었음.

명칭	신규 수임자(국적)
특별절차 수임자	
식수와 위생 특별보고관	줄리엣 윌레츠(Juliet Willetts, 호주)
에리트레아 인권 특별보고관	시하카 체모(Sihaka Tsemo, 카메룬)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아프리카 대표	사브리나 마타니(Sabrina Mahtani, 잠비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미주 대표	니콜라스 라이노(Nicolás Laino, 아르헨티나)
여성차별 실무그룹 미주 대표	다니엘라 살라사르 마린(Daniela Salazar Marín, 에콰도르)
강제실종 실무그룹 아프리카 대표	안즐리 파린(Anjli Parrin, 케냐)
용병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	프랜시스 톰 템프로사(Francis Tom Temprosa, 필리핀)

참고 1. 제63차 인권이사회 결의 한국 정부 투표 현황(괄호 안은 발의국)

	제목	찬성-반대-기권
1	아프가니스탄 인권상황(아일랜드(EU 대표))	투표 없이 채택
2	수단에서 진행 중인 분쟁 상황에서 엘오베이드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권상황(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28-10-9 **한국정부 찬성**
3	발전권(우간다(비동맹국가 대표))	28-14-5 **한국정부 기권**
4	일방적 강제조치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우간다(비동맹국가 대표))	27-16-4 **한국정부 반대**
5	인권 침해 및 민족자결권 행사 방해 수단으로서의 용병 사용(쿠바)	26-17-3 **한국정부 반대**
6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임무(쿠바)	26-16-5 **한국정부 반대**
7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보장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스위스, 아르헨티나, 모로코)	투표 없이 채택
8	청년과 인권(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필리핀,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투표 없이 채택
9	사이버 괴롭힘 대응(아르헨티나)	투표 없이 채택
10	모든 사람의 완전한 인권 향유를 위한 접근성 증진(중국, 부룬디, 카메룬, 파키스탄, 튀르키에)	투표 없이 채택
11	농민 및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실무그룹(볼리비아, 쿠바, 감비아,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33-0-14 **한국정부 기권**
12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서 굿 거버넌스의 역할(폴란드, 호주, 칠레,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구두 수정 후) 투표 없이 채택
13	디지털 기술의 맥락에서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르완다, 세네갈, 스웨덴, 우루과이)	(구두 수정 후) 투표 없이 채택
14	인권과 선주민(과테말라, 멕시코)	투표 없이 채택
15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방글라데시, 알제리, 오스트리아, 이집트, 그리스, 가이아나, 쿠웨이트, 네팔)	투표 없이 채택
16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처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17	민간 군사 보안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 감시, 감독을 위한 국제 규제체계의 내용을 마련하는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의	투표 없이 채택

	임무(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18	아동의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강화(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쿠바, 핀란드, 프랑스, 르완다)	투표 없이 채택
19	안전한 식수와 위행에 대한 인권(스페인, 독일)	투표 없이 채택
20	대인지뢰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지원 강화(알제리, 크로아티아, 모잠비크,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바누아투)	투표 없이 채택
21	이주민 인권(멕시코)	투표 없이 채택
22	러시아연방 인권상황(아일랜드(EU 대표))	21-5-21 **한국정부 찬성**
23	부룬디 인권상황(아일랜드(EU 대표))	22-7-17 **한국정부 찬성**
24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인권상황(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25-5-17 **한국정부 찬성**
25	국가인권기구(호주, 동티모르)	(구두 수정 후) 투표 없이 채택
26	아프리카계에 관한 전문가 실무그룹의 임무(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구두 수정 후) 투표 없이 채택
27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 분야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투표 없이 채택
28	인권과 전환기정의(스위스, 모로코)	(구두 수정 후) 투표 없이 채택
29	수사에서 실천으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대한 국제적 촉구(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30-0-17 **한국정부 기권**
30	조지아와의 협력(조지아)	투표 없이 채택
31	마셜제도 핵실험 유산의 인권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2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분야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3	예멘 인권 분야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이라크(아랍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4	강제적·비자발적 실종(프랑스, 아르헨티나, 일본, 모로코)	투표 없이 채택

참고 2. 제63차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상국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린 권고

국가	한국 정부 권고사항
나미비아	- 권고사항 없음
니제르	- 권고사항 없음
모잠비크	- 자연재해와 분쟁으로 심화된 식량 불안정 문제를 비롯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분쟁 관련 성폭력의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아동혼, 여성성기절제 등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국내 실향민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 실향민에 관한 국가 정책을 이행할 것
에스토니아	- 차별금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내 법령의 재검토를 고려할 것 -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언어를 이유로 한 혐오범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 -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면서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파라과이	- 특히 농촌 지역과 선주민의 양질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예방, 지원 및 구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체계를 시행하는 등 여성 살해를 포함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 아동 실종에 특히 중점을 두어 아동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수사와 후속 조치를 보장할 것
벨기에	- 구금 대안을 확대하고, 피구금자,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구금자에게 적절한 구금 환경을 보장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할 것 -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등 법집행에서의 인종주의 및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조율된 범연방 인종주의 대응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덴마크	-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 이행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할 것 - 신고, 수사 및 기소 전반의 공백을 해소하고, 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인종차별,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
팔라우	- 권고사항 없음
소말리아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를 위한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보장할 것 - 여성성기절제와 아동혼을 금지하는 등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국내 실향민의 기본적 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 마련과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
세이셸	- 권고사항 없음
솔로몬제도	- 권고사항 없음
라트비아	- 현행 법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중 인식을 제고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과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소수민족의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난민 신청자 및 난민이 법적 절차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시에라리온	-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무기한 통행금지 부과와 같은 불필요한 조치를 지양하여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존중되도록 할 것 - 특히 광업, 가사노동 및 농업 분야의 아동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 -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 및 생존자에 특히 중점을 두고 보호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러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싱가포르	- 핵심 국제인권조약,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를 보장할 것